

『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(BTO) 동의(안)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기존 구미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,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낙동강 수질오염 및 시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신설하수처리시설의 설치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도모 필요
-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, 우리시 재정상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 건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
-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
- ※ 본 사업은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구미시에 귀속되며,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임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
 - 사업명 :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(BTO)
 - 사업위치 : 구미시 오태동 일원
 - 사업개요
 - 하수처리시설 55,000m³/일
 - 공급관로 3.6km
 - 부지면적 59,926m²
 - 사업기간 : 36개월(시운전 6개월 포함)
 - 총사업비 : 948억원(국 474(50%), 도 99(10.5%), 수계기금 142(15%), 민자 233(24.5%))
 - 최초제안자 : (가칭)구미맑은물주식회사
- ※ 위 제안자는 제3자 공고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검토결과

- 조사기관 : 한국개발연구원(KDI)
 - 조사기간 : 2014. 11. 24 ~ 2015. 11. 27
 - 평가결과 : 사업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- [B/C(비용편익비) : 0.95¹⁾, 1.75²⁾, VFM(민자적격성) : 5.42%(VFM > 0 이상 적격성 확보)]

주) 1)의 경우 과부하량에 대한 유지보수 절감편익 가정시 비용편익비이며,
2)의 경우 신규편익으로 가정시 비용편익비 임

○ 추진현황

- '14.04.24 : 구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(환경부)
- '14.06.03 :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
- '14.09.30 : 국고지원 사전협의(환경부)
- '14.11.24 : 제안서 타당성 검토 의뢰(구미시 → 공공투자관리센터)
- '15.11.27 :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(공공투자관리센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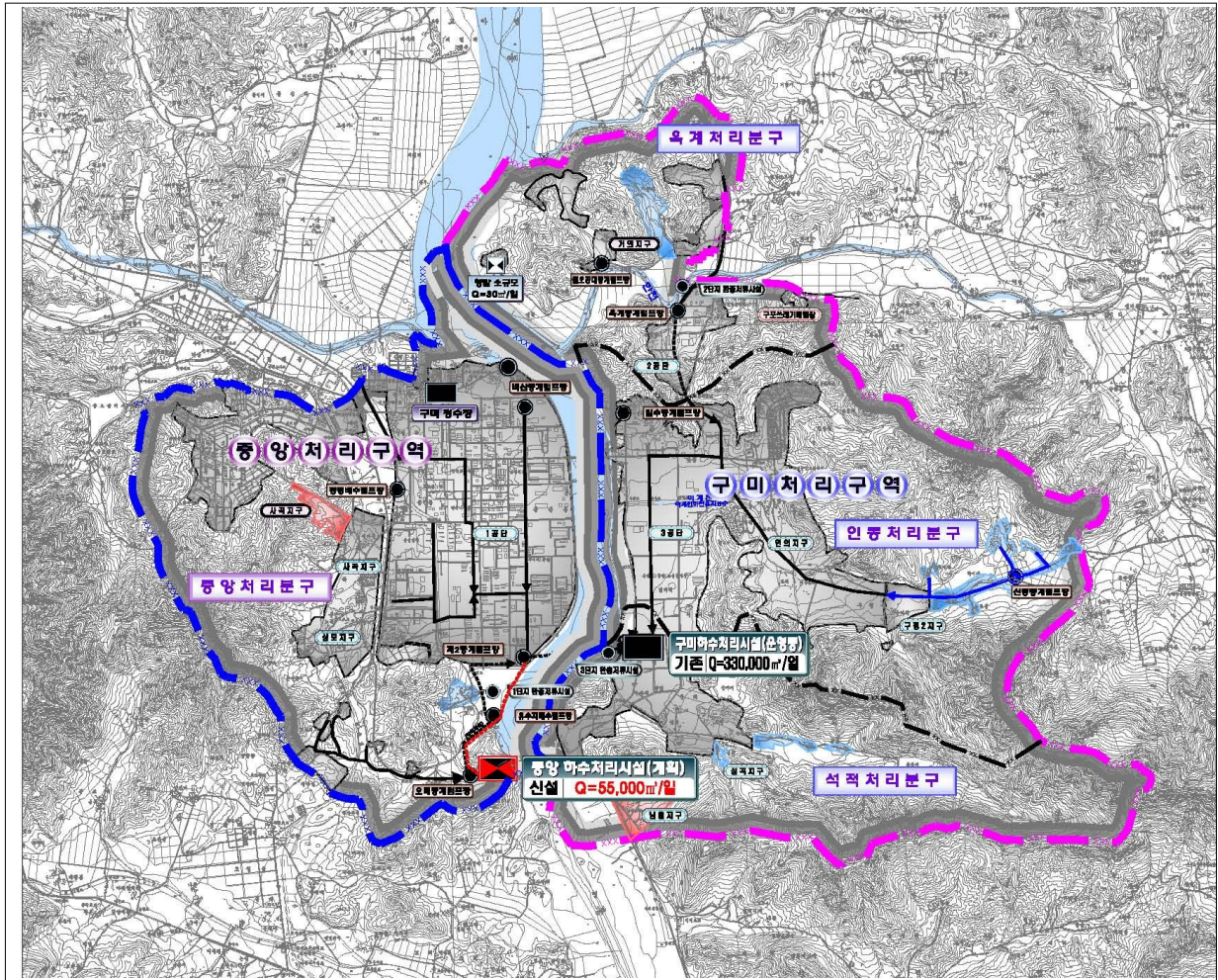
○ 향후계획

- '16. 07 :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
- '16. 11 :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
- '17. 06 :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수
- '20. 06 : 공사 준공

○ 위치도



○ 구미시 하수도처리구역

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(BTO) 동의(안)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제8호(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)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,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낙동강 수질오염 및 시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,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,

-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시 재정만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(BTO)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